

인터뷰 — 檢·警 수사권 조정관련 형소법 개정안 제출한 홍미영 의원

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 검찰과의 협력관계 명문화 필요

— 檢·警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인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수사기본 구조를 개정해야 —

문) 의정활동에 바쁜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답)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 수사경찰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경찰 대부분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경험에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부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의 수사기본 구조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답)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서 경찰수사관리를 규정하고 제196조에서 검사와 상호 협조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종결권과 기소권 등은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수사에 있어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 현재 열린우리당에서도 당론으로 형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홍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본 의원을 비롯한 87인의 국회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자, 열린우리당은 당내 「검정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을 출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하고 당론을 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현재 기획단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각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을 만나 보았다.



檢·警 수사권 조정에 관해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 홍미영 의원

홍미영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

「현행법은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는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경찰이 사실상 97% 이상의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하고 있는 현실과 현저히 괴리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인권과 절대적인 관련을 가지는 기본적 수사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 주체성」과 「검찰·경찰간의 협력관계」를 명문화하여 보

장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결코 이를 통하여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지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수사종결권·영장 청구권·기소권은 모두 검찰이 행사하되, 다만 경찰이 수사개시·진행권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명문화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검찰이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부당한 간섭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복잡한 지휘절차로 인해 실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기획단의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며,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입니까?

답) 지난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며, 여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회부됩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특별한 난관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지난 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 때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관련 경력을 가진 의원님이 여러분 계시고, 검찰에서 법률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법개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답)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주체성과 검찰과의 협력관계가 명문화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통해서도 이미 국민의 인권향상이 대폭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검찰도 경찰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더욱 국민의 인권 향상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안오모 기자 anohm@hanmail.net〉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95條(檢事の 捜査) 檢事は 犯罪の 嫌疑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搜查하여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경사, 경장, 순경을 사법경찰리로 한다. ③전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第196條(司法警察官吏) ①捜査官, 警務官, 總警, 警監, 警衛는 司法警察官으로서 檢事の 指揮를 받아 搜查를 하여야 한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홍미영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

한편 홍 미영 의원은 이번에 형사소송법 발의 외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 덧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특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채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급기야는 가해자를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계속되는 현실은 특례법이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법제정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적·구조적 결함 내지 문제점으로 특례법이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 하에서 경미한 제재수단인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현행 특례법은 보호처분의 도입으로 가해자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보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범죄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피해자보호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요체는 현행법에서 부족한 인권 중심의 위기개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우신문」 원고 모집

◎ 時論, 提言

-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 중 그때그때 사회문제화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

◎ 독자의 소리

- 일상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낀 일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

◎ “이래도 됩니까”

- 전·현직 누구나 ‘체면한 ‘일’ 중에서 사회 고발성’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특히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

◎ 취미나 건강

- 노후인생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건강법이나 취미생활

◎ 行事, 動靜, 結婚, 訃告 等

- 市道會, 地域會 행사 또는 동기생 모임이나 경찰재직중 갖게된 각종 모임 소식
- 회원의 출신계급과 관내·외 거주를 불문하고’ 소식과 動靜을 사진과 함께 송부
- 결혼, 부음 등은 일시 장소와 회원과의 관계를 명시
- 경우회의 발전방향이나 경찰과 관련이 있는 내용

※ 200자 ‘원고지’ 6매(A4용지’ 2매) 内外로 작성하여 경우신문 담당자 앞으로 송고

퇴직을 앞둔 경찰동지에게 알려 드립니다

■ 회원등록

- 회원등록은 거주지 관할 경우회 지역회(대부분 경찰서 청사내 위치)또는 본인이 원하는 관할 지역회에 회원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당시 근무관서장 발행)과 명함관 사진 1매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회비는 연간 12,000원 이상이며 2년분 회비를 납부하면 2년간 유효한 회원증을 발급함
- 다만 평생회원증은 회비가 200,000원 이상임, 신청용지는 시도회·지역회에 비치되어 있음

■ 경우신문 구독

- 구독신청은 경우회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 등에 전화로 구독 신청을 하면 자택(직장)으로 우송해 드리며, 구독료는 년 1회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지로용지(송금자 성명 병기)에 의거 구독료를 납부하면 됨

- 구독료 : 연간구독료 - 1만원
평생구독료 - 10만원

※ 입금계좌 (우체국 : 012468-0151196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문의전화 : 02-2234-1881

■ 무궁화회(골프모임)가입— 10년 이상 재직하고 회원등록 필한 자에 한함

- 무궁화회 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 당시 근무 관서장 발행)첨부 경우회 중앙회에 입회비(500,000원), 년회비(100,000원)와 함께 제출하면 경우회가 주로 되어 공동경영하는 기흥골프장(장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 소재 36홀 규모)의 회원자격으로 월1회(매월 세번째 월요일 06:00~07:00)이용할 수 있음
- 입회비 입금 계좌번호 : 제일은행 276-20-108132 현성일
- ※ 입회비 납부시는 납부사실을 경우회 중앙회 총무부장에 연락바람
- 등록신청서 용지는 경우회 중앙회(총무부)에 비치하고 있으며 전화가입 신청하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신청용지를 우송해 드림
- 등록신청서 제출시는 명함판 1매, 반명함판 사진 2매, 경우회원증 사본 1부 첨부
- 부킹은 매월 1일~3일까지 09:00부터 경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킹메뉴를 클릭 신청(문의전화 : 02)2234-1881)

■ 경우산악회 가입

- 입회비 30,000원(연회비 30,000원)을 경우산악회 총무에게 산악등산일에 현장에서 직접 납부하면 됨
- 산행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행 예정지 등은 사전에 통지함

대한민국재향경우회